

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| 기관의 장 |
|---|-------|
| 선 | |
| 람 | |
| | |

수 영 구 보 호외 제687호 2023. 1. 5.(목)

훈 령

○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1

| 회 | | | | |
|---|--|--|--|--|
| 람 | | | | |

· 발행 : 수 영 구 · 편집 : 기획전략과 (610-4075)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2023년 1월 5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377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직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정이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훈령의 개정)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보수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도시관리과"를 "도로보수원 관리부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도시관리과장"은 "도로보수원 관리부서장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도시관리과장"을 "도로보수원 관리부서장"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도시관리과장"을 "도로보수원 관리부서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도시관리과장"을 "도로보수워 관리부서장"으로 한다.

[별표]

공무직근로자 정원표(제7조 관련)

| 직종별 부서별 | 계 | 단순노무원 | 환경공무직 | 도로보수원 | 청원경찰 | 실무사무원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총 계 | 104 | 4 | 62 | 8 | 7 | 23 |
| 구 본청 소계 | 92 | 4 | 62 | 8 | 7 | 11 |
| 기획전략과 | 1 | | | | | 1 |
| 일자리경제과 | 3 | 3 | | | | |
| 행정지원과 | 8 | 1 | | | 7 | |
| 복지정책과 | 8 | | | | | 8 |
| 기초생활보장과 | 2 | | | | | 2 |
| 자원순환과 | 62 | | 62 | | | |
| 건 설 과 | 8 | | | 8 | | |
| 보건소 소계 | 12 | | | | | 12 |
| 보건행정과 | 2 | | | | | 2 |
| 건강증진과 | 10 | | | | | 10 |

◆ 제안이유

도로정비 업무이관에 따른 도로보수원 정원 조정 및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정원표를 현행화하기 위함

◆ 주요내용

가.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개정(별표)